

『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 《 檢 討 報 告 書 》

전문위원 김찬재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 본 조례안은

우리구의 교육여건을 개선코자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자치구세(목적세 제외)3%이내”를 “자치구세의 3% 이내로 하되 국·시·비 지원 경비는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 ○ 보조기준액중 목적세를 제외한 자치구세로 함은

- 지방세법에서 정한 자치구의 목적세로는 사업소세가 있으며, 사업소세에 대하여 동법 제244조에서 “사업소세는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2항 제3호는 서울특별시에서 교육비 특별회계전출금으로 교육경비를 지원할 때 지방세법 제6조 제1항에 규정된 목적세 해당금액을 제외토록 하였으므로, 우리구의 교육경비 지원예산도 이에 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 현재 사업소세가 목적세로서의 기능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아 교육경비 조례가 제정된 서울특별시의 18개 자치구 모두 사업소세를 제외하지 않는 실정을 참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 **보조기준액 에서 '국시비(구비 분담금 포함)로 지원하는 경비' 제외 함은**

보조 기준액의 상한을 정함은 예산편성시 당초 세출예산의 합리적 배분에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회계연도중 목적을 정하여 교부되는 국·시비(구비 분담금 포함)로 지원하는 경비를 개정안과 같이 보조기준액 에서 제외하여도 본 조례의 제정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개정안과 같이 보조기준액을 정할 경우**

- 2006년 지방세수입 예산액 70,877백만원의 3%인 2,126백만원까지 예산편성이 가능하고, 학생1인당 지원금은 최고 39,521원으로, 서울시 평균 23,877원을 상회하며, 서대문구에 이어 25개 자치구중 8번째가 될 것으로 사료됨을 보고 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고겠습니다.

2006. 2. 20

보고자 : 김 찬 재

- 붙임 : 1. 2006.자치구별 교육경비 조례 및 예산현황.  
2. 2006.구별 교육경비 학생 1인당 지원 예산현황.  
3. 자치구별 학교 현황.  
4. 관련법규.

# 2006.자치구별 교육경비 조례 및 예산현황

(단위: 억원)

자치구명	조례내용	지원기준액 (자치구세·세외수입)	지원한도액	2006예산액	전년대비 증(△)감
종로구	자치구세 3% 이내	556	17	5	0
중구	조례 미 제정	-	-	47	△7
용산구	조례 미 제정	-	-	15	8
성동구	자치구세 3% 이내	269	8	7	0
광진구	자치구세 3% 이내(구청장이 1%가감 가능)	299	12	8	△2
동대문구	조례 미 제정	-	-	11	6
중랑구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의 3%이내	529 (184+345)	16	10	4
성북구	자치구세 3% 이내	280	8	5	0
강북구	조례 미 제정	-	-	3	0
도봉구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의 2% 이내	575 (178+379)	12	8.5	0.5
노원구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의 3% 이내	800 (294+506)	24	14	2
은평구	조례 미 제정	190	9.5	8	0
서대문구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의 3% 이내	792 (225+567)	24	18	1
마포구	자치구세의 5% 이내	396	20	18	3
양천구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의 3%이내	1,253 (419+834)	38	17	4
강서구	자치구세 3% 이내	449	13	13	0
구로구	조례 미 제정	-	-	23	1
금천구	자치구세 3% 이내 (인건비 초과할 경우)	198	6	6	1
동작구	자치구세 3% 이내	251	7.5	7.5	△0.5
관악구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의 5% 이내	704 (271+433)	35	10	0
서초구	자치구세 3% 이내	1,180	35	25	△5
강남구	자치구세 3% 이내	2,274	68	54	△5
송파구	일반회계 2% 이내	2,322	46	11	0
강동구	조례 미 제정	-	-	10	1
<b>영등포구</b>	<b>자치구세 3% 이내 (사업소세 제외)</b>	<b>483</b>	<b>14</b>	<b>11</b>	<b>4</b>
<b>평        균</b>		<b>726</b>	<b>21.7</b>	<b>14.6</b>	<b>1.6</b>

## 2006. 구별 교육경비 학생 1인당 자원 예산현황

자치구명	학교수	학생수(명)	2006.예산액 (억원)	1인당 지원예산(원)	순 위
종로구	55	33,384	5	14,977	14
중구	45	29,318	47	160,311	1
용산구	55	31,533	15	47,569	3
성동구	74	42,590	7	16,436	11
광진구	88	59,533	8	13,438	19
동대문구	82	52,901	11	20,794	8
종량구	91	62,536	10	15,991	12
성북구	103	62,725	5	7,971	24
강북구	57	43,005	3	6,976	25
도봉구	80	61,071	8.5	13,918	18
노원구	167	120,900	14	11,580	21
은평구	99	74,281	8	10,770	23
서대문구	64	45,742	18	39,531	7
마포구	69	45,073	18	39,935	5
양천구	103	90,131	17	18,861	10
강서구	119	87,030	13	14,937	15
구로구	80	58,098	23	39,588	6
금천구	53	39,747	6	15,095	13
동작구	74	53,184	7.5	14,102	17
관악구	93	67,294	10	14,860	16
서초구	74	55,950	25	44,683	4
강남구	110	85,232	54	63,356	2
송파구	129	99,089	11	11,101	22
강동구	92	74,508	10	13,421	20
<b>영등포구</b>	<b>85</b>	<b>53,794</b>	<b>11</b>	<b>20,448</b>	<b>9</b>
평 균	86	61,146	14.6	23,877	

## 자치구별 학교 현황

자치구명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합 계	
	원수	원아수	학교수	학생수	학교수	학생수	학교수	학생수	원수 및 학교수	원아 및 학생수
종로구	18	1,324	14	10,683	9	5,907	14	15,470	55	33,384
중구	13	1,202	12	10,714	8	5,444	12	11,958	45	29,318
용산구	21	1,870	15	12,878	9	6,734	10	10,051	55	31,533
성동구	40	2,999	17	22,407	11	10,709	6	6,475	74	42,590
광진구	46	3,533	22	28,389	11	13,749	9	13,862	88	59,533
동대문구	37	3,035	20	25,250	16	13,958	9	10,658	82	52,901
종랑구	46	3,986	22	32,074	14	15,494	9	10,982	91	62,536
성북구	48	3,835	27	29,775	15	14,569	13	14,546	103	62,725
강북구	26	2,168	14	22,272	12	12,332	5	6,233	57	43,005
도봉구	36	3,692	23	31,970	12	14,841	9	10,568	80	61,071
노원구	74	8,159	42	51,748	26	28,927	25	32,066	167	120,900
은평구	44	3,454	25	36,403	16	18,104	14	16,320	99	74,281
서대문구	28	2,425	18	23,491	12	12,182	6	7,644	64	45,742
마포구	29	2,655	20	24,338	12	11,034	8	7,046	69	45,073
양천구	45	4,450	27	40,283	18	27,493	13	17,905	103	90,131
강서구	46	4,783	33	39,725	19	17,798	21	24,724	119	87,030
구로구	34	2,878	23	29,337	12	14,493	11	11,390	80	58,098
금천구	20	2,023	18	19,959	9	9,936	6	7,829	53	39,747
동작구	32	3,036	19	27,000	16	13,955	7	9,193	74	53,184
관악구	39	4,786	22	32,015	16	15,132	16	15,361	93	67,294
서초구	28	2,958	20	22,671	15	14,962	11	15,359	74	55,950
강남구	36	3,396	30	32,827	23	22,412	21	26,597	110	85,232
송파구	55	4,830	33	43,609	25	27,462	16	23,188	129	99,089
강동구	39	3,794	25	34,528	16	18,827	12	17,359	92	74,508
<b>영등포구</b>	<b>43</b>	<b>4,031</b>	<b>22</b>	<b>26,790</b>	<b>11</b>	<b>12,734</b>	<b>9</b>	<b>10,239</b>	<b>85</b>	<b>53,794</b>
계	923	85,302	563	711,136	363	379,188	292	353,023	2,141	1,528,649

※ 자료출처 : 제45회 서울통계연보(2005), 서울특별시



## □ 유아교육법

제26조(비용의 부담 등)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립 유치원의 설립 및 유치원 교사의 인건비 등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립유치원에 지원한다.
  - 1. 사립유치원 설립비
  - 2. 사립유치원 교사의 인건비 및 연수경비
  - 3. 교재·교구비
  - 4. 그 밖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호의 사항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립유치원에 지원할 수 있다.

## □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17025호)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시·군 및 자치구가 관할 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8.9.17, 2000.12.27>

-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 2.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 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 5.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 사업
- 6. 기타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 사업